

제392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2월2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50)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1)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050)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28)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30)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97)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0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76)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82)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066)
14.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관련 보고

상정된 안건

- | | |
|--|----|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0) | 2 |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1) | 2 |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0) | 2 |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28) | 18 |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0) | 18 |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2) | 18 |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7) | 18 |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3) | 18 |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2) | 18 |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3) | 18 |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6) | 18 |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2) | 18 |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6) | 18 |
| 14.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관련 보고 | 24 |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조해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연말 일정 중에도 공직선거 관련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3일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로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제 개편을 심사하는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영배 간사님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소위원회가 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확정장치 소음 규제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심의한 뒤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관련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답변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찬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찬진입니다.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논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 양대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구 확정 등 개정이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감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50)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131)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50)

(14시07분)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확정장치 소음 규제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장지원입니다.

확정장치 소음 규제에 관한 사항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가변, 확정장치 소음 규제 기준 마련으로서 윤영석·고용진·김성원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들은 확정장치, 휴대용 확정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소음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의 왼쪽 박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확정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주요 쟁점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결정 취지 고려입니다.

현재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둘 다 보장하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또 위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행태나 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소음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시한입니다.

현재 심판의 대상은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 관련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도 대통령선거는 상관없습니다.

만 내년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위반 시 제재 수단 고려입니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당선인이 소음 기준을 위반하여 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제재 수단을 형벌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형벌 외 수단, 가령 과태료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준의 입법 형식 및 위치입니다.

소음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중앙선관위규칙에 위임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고, 위임할 경우 대강의 기준을 정한 후 위임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기준, 가령 최고출력한도 등의 상한선을 설정한 후 위임하는 방법 등이 고려 가능합니다.

이는 추후에 조문을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중간의 시간대별 기준입니다.

4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고용진 의원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성장치를 쓸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만 이 조항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쪽 왼쪽 상단의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법 102조에 보면 이미 휴대용 확성장치나 차량용 확성장치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진 의원안의 시간 규제 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보시면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반대로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후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너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 개정의견 보시면, 이번 기회에 그러한 시간들을 통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왼쪽 하단 박스를 보시면, 개정안은 제79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확성장치 외의 기기 포함 여부를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고용진 의원안은 확성장치·휴대용 확

성장치만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윤영석·김성원 의원안은 녹음기·녹화기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기·녹화기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비디오·오디오 기기도 포함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 마련 여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위원판결된 부분, 즉 개정안은 79조 관련입니다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58조의2나 79조에서도 확성장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외에 58조의2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있는 확성장치나 79조 7항에 있는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설·대담하는 경우에도 확성장치가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한 것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관련이므로 이 시행 결과를 본 후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나 옥내모임에서의 확성장치는 추후에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용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적용할지 여부는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 지방선거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빨리 공포해서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라든지 어느 정도 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장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통과시키시되 대통령선거는 제외하고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을 보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에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과 선관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인데 12페이지는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예는 대통령령 혹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집시법에 따라서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지역이나 시간대별로 규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4쪽을 보시면, 마지막 사항입니다. 선관위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14쪽의 선관위 안을 보시면,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관련해서 제8항 ‘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호의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1호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제3항제1호 중 후보자가 사용하는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kW 및 음압수준 150dB’, 여기서 ‘제3항제1호 중 후보자’라는 부분은 대통령선거후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선관위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구체성을 띠기 위해 대통령선거후보자와 기타 선거후보자를 나누고 있으며 대통령선거후보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킬로와트와 데시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다음 중앙선관위 측 전문의견 검토 내용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서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출력과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안에 공감합니다.

확성장치의 출력은 정격출력을 차량용은 3kW, 휴대용은 30W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의 개정 의견을 우리 위원회는 금년 5월 25일 날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행안위 소위 심사 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대통령선거에서의 소음기준 상향 필요성 검토 결과 소음기준은 단순한 정격출력뿐만 아니고 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음압수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차량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kW, 음압수준 127dB, 대선후보자용은 선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달리 규정해서 정격출력 40kW, 음압수준 150dB.

참고로 정격출력 40kW는 제17대 대선 때 대선 후보자들이 40kW 쓰신 분도 계시고 36kW 쓰신 분도 계셔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40kW로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의 입법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석·김성원 의원님 안은 규제기준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사실 선거운동 규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자료 6쪽입니다.

규제대상과 관련해서는 녹음기·녹화기도 함께 소음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실제 운영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녹음기·녹화기를 확성장치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확성장치 소음규제만으로도 녹음기·녹화기의 소음까지 규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따로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처벌 수위입니다.

확성장치 정격출력 또는 음압수준 상한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의견이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확성장치가 선거운동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잘못 써 가지고 100만 원 이상 받아서 당 선무효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자.

다만 과태료를 너무 적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를 부과하되 한 번 위반했을 때 바로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감량기준에 의해서 1회 부과해 가지고 다시 또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때 최대 상한을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최대치를 1000만 원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대선 적용 유예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은 지방선거에 한해서 불합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선거나 대선에는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지만 향후에 대선이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한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두되……

지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각 정당에서 준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살펴서 법을 만들 때 적용 시기를 대통령선거 뒤로 늦추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격출력·음압수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스피커의 인증 절차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절차를 보시면, 스피커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스피커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기관인 KTL에다가 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작성해서 국립전파연구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인증서를 검토해 가지고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 인증서 발급한 걸 가지고 제조업체에서 스피커를 유통하게 되는데 이 시험성적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음압수준이라든지 출력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성적서를 우리 위원회의 표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확장장비를 쓰겠다고 표지 교부를 신청해 올 때 이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왔다가 선거 현장에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 가서는 이 시험성적서하고 그 제품의 모델, 확성기 뒤에 보면 모델명이라든지 데시벨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음압수준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대조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교부받은 것과 동일하다 하면 합법이 되는 거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 간 것보다 더 확대 개조해 가지고 출력을 크게 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급해 준 표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통영·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사무차장님, 우선은 전체적으로 소위 정격출력이라든지 음압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제하자는 선관위 안에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과태료로 하자는 선관위 안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선관위 안은 휴대용과 차량용의 사용 시간을 분리해 놔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개정 의견에는 7시부터 9시까지로 통일해 맞춰 놔줍니다.

○정점식 위원 휴대용도 같이 해 놔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녹음·녹화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선거 현장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을 사용할 때 야간에는 주로 녹화기, 음성을 같이 송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화면만 송출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면만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시간제한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위원님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선거 현장을 보면 녹화기에 화면을 출력할 때 소리, 음성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단순히 화면, 동작으로만 나타난 것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운영의 사례를 보면 소리가 문제가 돼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컨대 녹화기에 화면만을 가동시킨다고 하면 시간을 좀 달리할 의미도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소리와 화면, 동영상도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동영상이 나가는데 소리가 안 나가면 동영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녹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필히 음성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제한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선거 현장에서 보면 야간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설·대담용 차량을 대로변에, 주차장 같은 데다가 세워 놓고 녹화기만, 소위 영상만 계속 송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선거할 때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소위 음성을 동반하지

많은 녹화기의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금 연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제시한 안은 오전 8시부터 아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자료 4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안 냈던 것은요,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관위 안 17페이지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아, 휴대용이고,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량용은 8시 그리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7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간을 왜 달리 규제했느냐’ 하니까 ‘같이 규제했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왜 갑자기, 나도 이것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선 제가 제시하고 싶은 안은 음성 송출이 없는 그냥 화면만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조금 달리해야 된다. 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퇴근 시간은 제외하고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침 7시, 7시 반 정도부터 이것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용을 8시부터로 제한해 버리면 사실은 화면 송출만을 위한, 예를 들어 음성 송출을 8시부터로 규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로변에 연설·대담용 차량을 세워 놓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민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항의도 받기 때문에 음성 송출의 경우에는 8시부터로 제한을 하되 다만 화면만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녹화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해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102조에 휴대용과 자동차 부착용을 시간 구분을 해 댔는데 요즘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고 음성 송출용은 확성장치를 그냥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함께 규정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우선 녹화기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충분히 한번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맞추는 것은 동의합니다. 어차피 휴대용이나 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증폭해서 나가는 거고 휴대용 확성장치가 그렇게…… 사실은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 골목길 같은 데라든가 사람이 소수로 모이는 데에서 사용하라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적으면 확성기를 작은 것을 쓰니까 소리·소음도 크지 않으니까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할 수도 있다는, 후보자님들의 선거운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늘려 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춘숙 위원 휴대용 확성장치, 차량용 그다음에 녹음·녹화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쓰지 않습니다. 차량용만 쓰고요.

그리고 저는 차량용 확성장치를 오전 7시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정도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고, 오후에는 상관없습니다. 오후에는 8시 정도 해도 괜찮은데 아침에는 오히려 좀 일찍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녹음·녹화기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소리 안 나오게 해서 화면만 띄워 가지고 밤 한 10시, 11시까지 돌리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시간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차량용 확성장치를 오전 8시부터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면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시간이면 다 출근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깨어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좀 쓰고 저녁에는 조금 일찍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저도 여러 가지 할 말씀은 많은데 일단 시간과 관련해서, 차량용 확성장치를 8

시부터로 제한하는데 정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있는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출퇴근 인사를 보통 한 7시 정도에 나와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8시부터로 제한해 버리면 소위 말해서 그냥 몸으로 인사만 하고 방송은 8시부터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 지역인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로 이렇게 너무 제한해 버리면 저희가 선거운동하는 데 너무 제한을 받으니까 차량용 확장장치의 경우에도 8시가 아닌 7시부터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차장님, 아까 고용진 의원안이 무의미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뜻이지요? 차량용 확장장치 시간이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렇게 선관위 안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고용진 의원안은 더 늦게, 예컨대 확장장치를 쓰려면 휴대용이나 차량용이나 저희 안은 8시부터 허용해 주자는 취지인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그것을 또 부족하다, 시간을 앞당겨서 7시부터 허용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고용진 의원님 안은 저희들 안보다 더 늦춰 가지고 9시부터 쓰게 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김승남 위원 그런 의미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김승남 위원 저는 확장장치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확장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전 8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마는 선거가 여름철에 치러지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이 5시부터 움직이고 그러는데 8시부터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이게 선거 운동원들 또 선거 출마자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7시 이전부터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는 녹화기 그다음에 녹음기를 방송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면하고 음성하고 동시에 트는 것이지 만약에 이 법이 확실히 마련이 돼 가지고 오후 8시부터는 화면만 틀 수 있다더라 이렇게 홍보가 되면 충분히 그 부분은 실행될 수 있다.

아까 차장님께서서는 그게 잘 실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면만이라도 틀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후 8시면 여름에 막 해가 떨어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을 못 하게 한다, 그것은 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면일 경우에는 한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님이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시간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요. 특히 대체로 대도시들은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 6시에서 한 7시 반, 8시 이때 집중되는데 아무래도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주변이, 특히 수도권 주변에 있는 도시들 그다음에 큰 도시 옆에 있는 곳에 사는 곳들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늦게 퇴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하고 막상 선거운동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주근접이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직주가 분리돼 있는 조건에서 특히 지방선거가, 뭐 대통령선거야 텔레비전 보면 늘 나오고 한 사람 보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남양주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후보자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됐든 소리가 됐든 가능하면, 물론 민원이 그래도 좀 적은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시간은 폭넓게 보장해 주는 게 옳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녹화기 같은 경우는 소리를

안 내더라도 밤 11시까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장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차량용이든 개인용이든 7시 혹은 그 전이라도 사실은 좋은데 지금 7시로 제한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들이다 7시로 돼 있으니까 7시 정도로 맞추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 부분에서도 저는 벌금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의견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선관위는 과태료……

○김영배 위원 예,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다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대통령선거도 지금 말씀대로 규제를 정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약간 아리송하긴 한데 대선에서는 이번에 실험적으로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고.

특히 최근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가 왔는데 후보 목소리를 멀리서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시끄럽게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선택에 맡겨 두는 게, 이번 지방선거는 한번 규정을 정하고 대선 때는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질문하고 싶은 게요 소음규제의 기준 수치 관련해서 정격출력을 한 5kW 정도로 해 달라고 하는, 정개특위 위원 중에 김민철 위원님은 그걸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높여 놓고, 왜냐하면 지역의 넓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또 그 주변의 소음의 정도라든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게 하면 본인이 손해일 테니까 맥시멈 정하는 걸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아까 교수님들 보니까 학문적인 근거도 있다는 식으로 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3kW하고 5kW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5kW하고 3kW는 단순 수치 문제가 아니고 지금 WHO에서 제시한 기준이 3kW · 127dB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 전문 교수님들 세 분한테 의견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127dB이 사람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기를 견뎌 낼 수 있는, 견뎌 낸다는 말은 여러 가지 목숨과도 관련될 뿐만 아니

라 환경 적응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마지노선이다,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안은 110dB인데 이것을 5m 쪽으로 더 늘려 갖고 했던 것을 1m로 가져와서 측정하는 기준을 대다 보면 127dB이 됩니다.

그러면 3kW · 127dB이 사람이 가장 견뎌 낼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이걸 5kW로 소리의 크기를 확장해 버리면, 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감도를 아무리, 92, 93, 100으로 감도가 측정이 됐는데 소리의 음압 수준을 아무리 낮게 해도 도저히 WHO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면서 다른 데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WHO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받아야 될, 국가가 보호해야 될 마지막 기준이 이거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법을, 확장장치 크기에 대해 정했다고 하는데……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쭙볼게요. 이게 지금 주거지역에서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거리나 차량이 다니거나 대로변이나 이런 데서 기준은 아닐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반드시 주거지역만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도 유세를 해 보면 차량을 세워 놓고 할 때 상가가 많은 지역들하고 그다음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예를 들면 대학로 같은 데 이런 데 차가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세를 할 때하고 아파트단지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지요, WHO의 기준이라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지금 우리가 우선 3kW를 했던 것은 지난 21대 총선 때 후보자들이 저희들한테 선거비용 보전청구했을 때 회계서를 싹 검토했더니 2kW에서 5kW가 제일 많았고 그중에 3kW가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데 보전할 때 업체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보전을 출력크기 갖고 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쓰는 것보다 높게 업체에서 해 주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보전청구를 해 주고 우리는 실제 후보자가 썼다고 하면 그 kW에 맞는 것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선거현장에서 예컨대 3kW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4kW, 5kW로 했다고 계약을 해 갖고 보전청구해 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3kW도 저희들은 충분하다, 3kW 가지고도 지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5kW로 해 가지고 후보자들이 자제해서 3kW, 그러면 현장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쓰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5kW로 해 놓으면 5kW 쓰려고 그러지 이걸 5kW까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kW나 2kW로 줄여서 쓰지는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했고.

3kW라는 그 자체는 어디 특정 장소에서, 주거 지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리상에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지역에서 산출해낸 거기 때문에 소음지역이 많은 대로변에서는 이 출력이 좀 완화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 하여튼 출력을 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낮하고 저녁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물론 낮에도 수면에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몰 이후에는 보통 우리가 확장장치 같은 것 사용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kW, 3kW를 한다면 만약에 쓸 수 있는 출력 한도를 그렇게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구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 죽습니다. 그것 단속 항의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이 손 놓고 후보자 따라다녀야 됩니다, 자동차 따라다녀야 되고.

○정점식 위원 단속이 불가능할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소음 규제와 관련해서 3kW 및 127dB이라고 하나요? 이걸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3kW 이내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데시벨이 127을 초과해 버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안 됩니다.

○이정문 위원 안 된다 그런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그래서 제품을 그 정도로 정해 놓고 확인해 주는, 시험성적서에 이 제품은 출력이 최대로 해도 3kW고 이때 데시벨은 127 이상은 안 넘어간다 그것을 지금 시험성적서에다가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오면,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해 준 걸 가지고 오면 표지를 교부하겠다, 그 표지를 붙이고 사용을 해라.

○이정문 위원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3kW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데시벨이 중요한 거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5kW로 하면 뒤의 데시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정문 위원 맞출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소리, 음량을 좀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소음은 단순히 소리음량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강도도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3kW로 줄이는 것 관련해서는 도시지역, 밀집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을 한가운데다 세워 놓고 논이나 마을을 향해서도 방송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는 터진 공간이고 그래서 3kW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까 김민철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또 농촌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지금 3kW·127dB 정도면 이것을 20m 거리로 환산을 해서 하면 95에서 1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소음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철도변에 열차 지나갔을 때 소음 크게 들리는 그 정도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어느 정도까지를 들리게 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거리는 그 정도 규격이면, 그 정도 소리음량이면 상당히 커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시한 것도 WHO에서 우리한테 기준으로 제시한 것 중에 최대치를 적용해서 산출해 낸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것은 다시 말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최대치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선관위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비주거지역, 농촌·도시지역 다 일률적으로 3kW라고 규제를 하셨는데 이걸 좀 세

분화해서, 예를 들어 주거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결국 그것은 첫 번째는 후보자들이 자중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되면 강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제품을 달리해서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관위 직원들이 데시벨 측정기 들고 다 따라다니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그러다 보면 이것 확성기 하나 가지고 후보자도 불편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이정문 위원님 말씀 중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농촌은 면적도 넓고 그리고 취락이, 마을들이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선거기간 안에 후보자가 자연부락에 일일이 다 들어갔다 나올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지나가면서, 그냥 마을을 향해서 스피커 틀어 놓고 지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보통 100m, 200m 이렇게 되니까 대로변에서 크게 해도 마을에서는 안 들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정문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유권자에게 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차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 동구울의 강대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소음하고 시간이 쟁점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문사항이 127dB이라 하면, 우리가 전투기 뜰 때 지역의 소음규제 피해보상을 하는 게 80dB 이상 전파소음일 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투기가 뜰 때 80dB 정도 되면 사실 옆 사람하고 대화가 불가능한 크기가 되는 게 80dB인데 120dB이라 하면 굉장히 굉음 내지는 도저히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귀로써는 들을 수 없는 굉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 이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통령선

거할 때는 사실 광역시·도별이라도 큰 메인 차가 1대 있고 그다음에 2호차가 또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이런 형태라 가지고 1대 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음이나 우리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인데 왜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동시적으로 선거할 때 전부 다 그 자리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 지하철역 주변의 사거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가는 데 서로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거기에 방송차가 5대씩, 6대씩 집중적으로 양 사거리에 다 돼 있을 때 서로 같이 경쟁하듯이 막 확성기를 틀어 놓고 이랬을 때 지나가는 시민들이라든지 구민들이 전부 다 귀 막고 짜증을 내면서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한 상황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국회의원선거할 때는 우리가 다 당제라 여러 당이 있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 정도 서서 같이 인사하고, 안 그러면 서로 배려해서 저녁에는 당신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구의원이 3명씩 이렇게 되는데 다 당이 다르고 거기다가 시의원, 구청장 이렇게 종합적으로 막 서 있다 보니 그게 13일간, 14일간 계속 그런 소리를 내니까 그 주변의 인근상가라든지 그 주변의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계속 선관위라든지 경찰이라든지한테 민원을 넣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소음법 쟁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인정해 준 그 kW하고 확성에 맞는 그 장치를 인정해 줘 버리면 그걸로써 끝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측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에서 고의로, 예를 들어서 어느 후보가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랬을 때 선관위에서 달려갑니다. 달려와서 선관위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정해 준 그걸로 계속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저희들의 대안은요, 지금 문제는 시험성적서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성기는 3kW·127dB이라는……

○강대식 위원 차장님, 시험성적서에 나오는 그것하고, 요새 기술이 좋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소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차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충분히 더 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요새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아니, 저희들도……

○강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때 받아 가지고 사용하다가 올렸다가 나중에 또 떼고 이러는데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 소음을 측정하지 않고서는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 이것을 확인을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그 말씀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하도 개조를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소리를 키웠다가 선관위에서 단속 나오면 또 그것 종전에 있던 걸 붙여 가지고 그러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하자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정말 상대후보가 악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현장에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그것 필요한 경우에는 데시벨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현장에서 꼭 점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통령선거하고 광역단체장 선거하고 기초단체장하고 이것은 좀 구분해야 될 게, 왜냐? 대통령선거 보면 유세차량 1호 차량이 보통 5t짜리입니다. 5t을 사용해요. 5t의 거기에 다는 어떤 출력하는 그것하고 우리가 보통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선거할 때 1t 차량을 씁니다, 1t 차량을.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4·7 보궐선거 때 보면 전부 다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들한테 1호 차량 유세차량이 4.5t입니다. 4.5t을 썼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2호 차량들이 보통 2.5t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는데 이 1t 차량하고 4.5t이라든지 5t 차량하고는 출력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것은.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적어도 광역단체장 정도는 기초단체장하고 밀의 시도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를 좀 뒤야 되지 않겠나……

차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국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한해서는 워낙 선거가 크니까, 이런 다른 선거에 비해서 그 규모가 예컨대 40kW, 다른 선거는 3kW인데 40kW, 데시벨도 150dB, 이 150dB 정도면 한 1000명 이상이 광화문광장 같은 넓은 데에서 모여 있어도 할 수 있는 용량 크기 정도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4·7 재·보궐선거 때 또 이 앞의 2018년도 선거 때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30kW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3kW 쓰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치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엔간하면 통계치를 내 가지고 좀 제시를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당별로 또 후보자별로 여러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대개는 4kW 쓰신 분도 있고 5kW 쓰신 분도 있고 3kW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kW 이하를 쓰신 분들도 꽤 돼요, 물론 후보자 재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광역장, 광역·지사 그게 어느 정도가 맞느냐 이게 상당히 안으로 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연구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대통령선거 후보자하고 중간 정도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단순 수치로 하면. 그런데 중간 정도 한다고 해 가지고 소리도 중간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 가면서 광역장은 어느 정도, 지금 갖고도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법을 만들 때는 이보다는 좀 더 소리를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음압수준을 높여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전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많이 급박해서 이게 우리가 정할 수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광역단체장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레벨업을 시켜주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대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시지방선거가 일어났을 때는 시골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은 좀 덜하겠지만 러시아워대라든지 출퇴근시간대·등하교시간대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13일간은 굉

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수법으로 어떻게 지금 명확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사거리 지역 이 지역은 좀 더 낮춘다, 같이 낮춘다’ 이렇게 어떤 부수법안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평상시에 정해 놓은 그 출력에 그 데시벨로 동시다발적으로 5대, 6대가 한꺼번에 양 사방을 보고 때린다면 그 지역은 정말로 14일 동안은 굉장히 힘든 지역이 됩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좀 고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그리고 현재에서 제시했던 시간대가 출퇴근 전후로 했기 때문에 7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농촌지역이라든가 또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가 여름이나 언제냐에 따라서 활동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현재는 평균치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 이전, 8시 이전에는 그래도 집을 떠나기 전이거나 아니면 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는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평온한 삶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는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현재 입장인 것 같고요.

○강대식 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그냥 화면상으로 음이 안 나오는 어떤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그것은 굉장히 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같이 홍보영상과 소리가 동시에 났을 때 어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민원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영상만 이렇게, 소리 내지 않는 영상만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 가지고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차장님,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지금 사실 집시법은 지역별로 이렇게 데시벨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집회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지역은 소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몇 dB 이하다. 여기는 비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몇 dB 이하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그걸 측정을 해 보면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이 연설·대담용 차량이라는 것은 선거구 내 전체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데시벨을 조정한다면 사실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관위 직원 한 명 한 명이 각 연설·대담용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측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해서 이게 사실 처벌조항이 사문화될 염려가 있는 거지요, 지역별로 달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출력을 높여 준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차량이라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때는 그 출력 이하로, 일반 수준으로, 일반 선거 수준으로 낮추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정점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광역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하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광역선거의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를 후보자가 사용하는 경우, 후보자가 사용하지 않고, 후보자용이 있고 선거사무소용·선거연락소용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후보자들이 오면, 특히 대선후보자들이 오면 굉장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그렇게 해서 후보자용 자체는 후보자가 쓰든 후보자가 안 쓰실 때 그 후보자가 지명하는 다른 사람, 연설원이 쓰든 그것은 똑같이 후보자가 쓰는 150dB 그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1대만, 숫자는 1대만 하고요.

○정점식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에서는 이 출력의 차량을 몇 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후보자용 1대인데요, 후보자용 1대인데 그 1대만큼에 한해서는 누가 쓰든지 간에 출력도 크게 해 주고 데시벨도 높여 줬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사용하는 확정 장치 이게 신고할 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게 우리한테 표지교부 신청해 올 때요, 그 서식에 보면 거기에 후보자용인지 선거연락소용인지 선거사무소용인지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표지교부……

○정점식 위원 그러면 대선용은 몇 대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후보자용 1대하고요, 시·도 연락소, 시도마다 연락소도 있고 시군구마다 또 연락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자기가 두고자 하는 숫자만큼 표지교부를 해 가면 거기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 원선거구 기준으로 하면 253개 각 국회의원선거구별로 1개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이론적으로는 다 그래 가지고 비용이 충당이 된다고 하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다면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도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격출력을 높여 주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광역단체장도 선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기초의원들이라든가 기초장보다 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옛날에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정당연설이라든지 그다음 집회에 의한 선거 운동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 후보자가 다니면서 자기를 알리라는 그런 취지인데 자꾸 확정장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많이 모아 놓고 가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확정장치 소리가 큰, 출력이 큰 것을 통해서 해라라는 이런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왜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했냐?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경우에는 보면 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래서 전번에 국회에서도 이제 대통령선거 후보자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었었고요.

광역단체장도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그러면 어떤 규모로 해 줄 거냐, 이 부분은 다시 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고민을 할 필요가 뭐 있겠

습니까? 대통령선거의 경우나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모로 집회를 개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3조 제1호 중…… 아, ‘3항 제1호 중 후보자가 사용하는 확정장치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놔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정점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광역단체장선거를 예시를 하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확정장치는 정격출력 3kW’ 이런 식으로…… 아, 이것은 휴대용이구나. 40kW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병렬을 시켜 주면 되는 거지 3조 제1호와…… 아, 3항 제1호와, 제2호가 광역단체장인가요? 앞에 생략이 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위원님, 대통령선거 후보자하고 시·도지사 후보자하고는 같은 선에서 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버리면……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역단체장후보자의 경우에도 같이 규정을 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격출력을 좀 높여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선거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일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또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괜찮아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광역의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 ‘서울시 인구 1000만, 경기도도 1000만이 넘는 광역단체장선거인데 거기를 대통령하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 같이 규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왜 자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용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용하고는 규격을 좀 동일하게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증폭장치를 크게 해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런 취지 아니시겠습니까?

○정점식 위원 예,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저도 후보자 선거운동을 넓혀 주자는 취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또 광역단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규모라든가 여러 면에 차이가, 예컨대 세종시하고……

○정점식 위원 아니, 거기는 특별자치시도를 빼

버리면 돼요. 일반 광역…… 특별시와 광역시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인구 60만하고 1000만하고 규제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에는 굳이 다른 시도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7회 때 이 앞의 지방선거 때나 4·7 재·보궐선거 때 썼던 후보자님들이 많아야 5kW·10kW, 아주 30kW로 쓰신 분은 예외적인데 광역단체장까지 40kW·150dB로 확대하면 오히려 더 소음이 확 늘어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소위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 그런데 광역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후보자 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소 2명, 많아 봤자 서너 명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와 같은 규제 정도로 그 규제 한도를 조금 넓혀 줘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 현장은 각 정당 추천받은 사람들끼리 광역단체장하고 기초장·기초의원들·시도의원들이 또 모여 가지고 하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연설·대담용 차량을 가지고 한 지역에. 예컨대 광역단체장이 어느 군에 가면 어느 군에 있는 사람들, 같은 정당 추천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하고 또 다른 군으로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음이 커 가지고 일반인들이 참기 어렵다고 하는데 소리도 넓혀 놓고 또 모여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을 규제, 좀 조정한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증폭시키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토론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시간도 생각하면서 일단 위원님들 의견은 제시만 하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것이고 또 선관위나 관계기관 쪽에

서도 그냥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닙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선관위의 의견만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서 최종 결론은 또 저희가 내리는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간 문제부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휴대용 장치가 7시부터, 그러니까 선관위 안이 9시까지로 되어 있고 차량용 확성장치가 8시부터 8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공히 전부 다 아침 7시부터 하는 것으로는 다 다수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휴대용 확성장치하고 차량용 확성장치를 9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휴대용은 11시까지 기존대로 두고 차량용 확성장치를 9시 정도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만 좀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녹화기 이것은 한 11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지요. 그렇게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된 것 같거든요.

○김승남 위원 소리 없이.

○김영배 위원 예, 그러니까 소리 없이. 그래서 녹화기만 트는 것으로 그게 다수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결론적으로 휴대용 확성장치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할지, 기이 있던 대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할지 좀 의견을 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아까 기준 수치 관련된 소음과 관련해서는 3kW·127dB 대체로 다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광역자치단체장을 예를 들어서 20이면 20 이런 정도로, 1대 정도 후보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더 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다수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만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점식 위원 예, 아까……

○소위원장 조해진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용과 차량용의 사용시간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 선거 현장에서 사실상 휴대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리고 휴대용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에 들어가서, 차량이 안 들어가는 골목길에 들어갔을 때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골목길에 들어가서 휴대용을 사용한다면 사생활 침해는 오히려 차량용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시간을 아침 7시부터 뭐 선관위 안…… 선관위는 차량용을 8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해 봤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를, 두 가지로 같이 했으면 어떨까……

○김영배 위원 9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하면 사실은 지역에 돌아와서……

○정점식 위원 그러시지요.

○김영배 위원 예, 9시는 괜찮거든요.

○정점식 위원 사실은 아파트 지역에서 9시까지 사용하면 표가 떨어지지 들어오기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후보자들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로 그것은 정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도 이제 동의를 하셨겠지만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와 동일하게 규정을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거의 의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춘숙 위원 저 의견을……

○소위원장 조해진 예,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저는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찬성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할 때 선거운동을 하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광역단체장이 움직이는 포스트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 부분은 대체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까 그러면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김영배 위원 근데 거기 빼면은……

(웃음소리)

○정점식 위원 차별한다 그러나요?

○김영배 위원 세종특별은 자치시도로 돼 있어서 특별히 더 자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소위원장 조해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지요.

○정춘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녹화기 하는 것은 그냥 12시까지 하고, 어차피 정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시간, 예를 들면 우리가 11시까지로 하면 좀 일찍 하고 정리를 해야지 되니까 그냥 12시까지 해 주면 그사이에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점식 위원 그러면 규정상에서 녹음·녹화기 부분에서 사용 시간을 동일하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이렇게 해 놓고, 다만 음성의 송출이 없는 녹화기의 경우에는 저녁 11시까지 가능하…… 아, 12시까지 가능하……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그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규정을 해도 되는데요. 12시까지…… 좀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녹화기 송출 때 광선 이런 게 좀 수면이나 여타 심야의 평온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

○정춘숙 위원 저희가 보통 이렇게 틀게 되면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철역, 사거리, 사람이 다닐 만한 곳에 틀지 동네 아파트에 틀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정점식 위원 아파트 앞에서 틀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정춘숙 위원 그렇게는 못 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거운동을 그냥 그러 보면 보통 저희가 그렇게 막 아파트 앞에서 틀고 이렇게는 안 하고 사람이 다닐 만한 곳, 그런데 그때가 6월 달이고 저희가 4월 이렇게 하게 되면 밤 늦게까지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12시까지 꼭 틀자 이런 건 아닌데 11시까지 하면 그 전에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 문제가 되면 11시로 할 수는 있는데……

○정점식 위원 11시까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춘숙 위원 11시까지 하고 그러면 정리해야 되나?

(웃음)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화면 송출만 꺼버린 상태에서 저녁에 정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정춘숙 위원 예, 맞아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11시가 우리 위원님 대다수 의견이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선관위 하실 말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위원장님, 그러면 만약에 녹화기 화면만을 송출해야 되는데 소리까지 넣어 가지고 했을 때 제재 방안이 있는지……

○정점식 위원 그것은 만약에 있으면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김영배 위원 그것은 과태료를 내야지요, 과태료.

○정춘숙 위원 과태료를 넣어야지요, 과태료.

○이은주 위원 과태료.

○정점식 위원 조문에 정리를 해 놓고 그 뒤에 소위 제시벨을 초과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차량용, 휴대용 대수 초과는 일반 256조로 형사범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정점식 위원 나머지 그것도 일종의 소위 제시벨 위반하고 동일하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해당 개정 조항을 261조 과태료 조항에다 넣으면 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래서 이 회의 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만들 때, 과태료 규정 넣을 때 요건에 이 회의를 근거로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 예.

○소위원장 조해진 위원님들 말씀 중에 광역단체장후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고 하시면서 대통령후보자하고 맞추자고 말씀하셨는데 규정 문안은 ‘후보자가 사용하는 확정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후보자 개인인지 아니면 후보자와 찬조 연설을 포함한 이런 여타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정점식 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이런데…… 후보자의 경우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전국에서 1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후보자용은 1대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후보자로 정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후보자가 후보자용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시도에 가면 시·도연락소 것을 쓰고 또 후보자용 것을 지방으로 못 끌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시·군에 가면 또 구·시·군에 있는 연락소용 앰프를 써서 연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점식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했던 것은 후보자용, 그 용이 중앙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한해서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에서 1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여기도 ‘후보자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1대.

○정점식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1대 후보자가 신청하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딱 1대씩밖에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정점식 위원 이 정도는 허용을 해 줘도 된다는 취지지요.

그래서 3항 1호에 이어서 ‘3항 2호 중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이렇게 문구가 정리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금 헛갈리는데……

○정점식 위원 생략을 해 놔서 그런데 79조 3항 1호와 2호에서 각……

○김영배 위원 저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선거운동용 차량을 등록을 할 때 내가 시·도지사든 대선후보든 몇 대를 등록을 하는데

그중에 ‘이 차는 후보자용이요’라고 따로 등록한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습니
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그 차의 정격출력 용량이
다른 차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김영배 위원 다른 차가 다를 경우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김영배 위원 등록할 때 그 차를 등록했는
데…… 그렇지요?

대선후보가 A라는 차를 40kW를 쓰겠다고 했는
데 부산에 있는 차를 내가 후보자니까 부산에서
갖다 쓰면서 또 그걸 40kW로 하면 그것은 등록할
때와 틀리니까 위반이다 그 말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그것
은 후보자가 사용했을 뿐이지, 부산에 있는 연락
소용이지 후보자용 차량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조해진 문제는 표현이 ‘후보자가 사
용하는’ 이렇게 해 놓으니깐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정확하게 하려면 ‘후보가 후보
자의 차량으로 등록한’ 이렇게 하면 혼동의 여지
가 없는데……

○전문위원 장지원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
신다면 지금 14쪽의 선관위 안이 설명과 달리 문
리적으로 보면, 14쪽의 선관위 안에 보시면……
8항의 밑, 14쪽입니다.

‘제3항제1호 중 후보자가 사용하는 확정장치’
그래서, 3항이 대통령선거입니다. ‘대통령선거용
중 후보자가 사용하는’ 그래서 선관위 설명과 달
리 문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를 빼 버리고 예를 들면 ‘제3항 1호에 사
용하는 확정장치’라든지 어쨌든 후보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문구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 잘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3항 1호가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연락소마다 각 1대·1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 장지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관위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후보자가 신청 등록한
것만 출력을 높인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경남도

연락소에서 신청한 차량은 일반 정격출력하고 동
일하고 후보자가 경남에 내려가서 그 차량을 사
용하더라도 정격출력을 높일 수는 없다는 취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습니
다. 만약에 그걸 허용하게 되면 제한한 취지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정점식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소위 3
항 1호 제일 앞에 있는 ‘후보자가 사용 신청한’으
로 표현을 하든지 그것은 선관위 쪽에서 신청서
가 어떤 양식으로 돼 있는지를 보고 같이 문구는
논의를 해야 되고, 역시 2호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지요.

○전문위원 장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이 문구 때문에 실무상에서
무슨 혼선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겁니까?

○정점식 위원 만일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위 대
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 신청한 차량용 확정
장치는 누구든지 그걸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김승남 위원 차장님, 과거에 대선 때 보면은
그러면 지금과 같이 후보자가 직접 사용하는 차
1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했습니까, 아
니면 시·도당별로 똑같이 이렇게 데시벨을 나오
게 해서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대개 후
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후
보자용이 주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다
니고 후보자가 지방에 왔었을 때는 지방 것 사용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승남 위원 아니, 지방 걸 사용했을 때 출력
이나 이런 것들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때는 대
선 그것은 위험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니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차량을 지방으로 이동시킬
수 없으니깐 똑같은 규모의 차량을 몇 대 만들어
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구·
시·군연락소에 오면은 서울의 후보자용을 못 끌
고 오면은 구·시·군에도 연락소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가 1대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하자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구·시·군까지 다 허용을 하게 되면……

○김승남 위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차가 못 내려오면 확장장치를 구·시·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김승남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규제를 하자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소위원장 조해진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확장장치 소음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다시 정리 종합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828)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930)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33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697)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0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7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24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276)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282)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66)

(15시20분)

○소위원장 조해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0건의 피선거권 연령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원 피선거권 제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가면, 피선거권 제한연령 하향 조정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25세에서 선거권과 연동한다든지 18세, 19세, 20세 혹은 21세로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3쪽 좌측 하단의 이 개정안들은 이러한 피선거 연령 외에도 정당의 청년후보자의 의무추천 등 다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늘 논의하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입법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통해 젊은 세대의 공무담임권을 강화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2020년 1월 14일 시행된 선거권 연령 하향, 즉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된 것에 이어 젊은 세대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위한 입법의 연장선으로 생각됩니다.

대체토론 말씀해 주셨는데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정당가입연령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청소년의 출마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당법 등의 개정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시되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시행일 및 적용례입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적용 시점과 대상 선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개정안 시행 시기가 특정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이후가 된다면 피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새롭게 각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게 된 사람과 기존에도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었던 사람 사이에 선거운동의 기회 등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 5곳의 선거일정 등을 고려하여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대상 선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11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후보자 등록일은

내년도 2월 13일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정당가입연령의 조정 필요성입니다.

만약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선거권자 연령인 18세로 하향할 경우에는 정당가입연령과의 관계 고려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선거권의 연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리적으로만 보면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일에 18세가 되는 청년은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그 공직선거일 이전에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고 오로지 무소속 후보자로만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안정적으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준비기간 확보,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예상 쟁점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중앙선관위 측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피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선출직 공직자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어떤 정치의식, 정치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연령 인하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연령을 낮췄을 때 대개 후보자로 나오면 정당 추천을 받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당 가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해 해야 되는데 2소위에서 다루어질 정당법 개정안에 저희들은 이미 16세로 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장님,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16조 2항에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헌법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된다, 또는 소위 16조 3항의 다른 경우에는…… 3항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현재라는 문구가 제일 앞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선거법 16조 2항에서 ‘선거일 현재’라는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상 그냥 선거일 현재 25세만 되면 소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다 해석을 해 왔지 않습니까, 다른 조항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런데 17조에 보시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요 선거일이 되어야…… 그러니까 만약에 18세로 바꾸더라도 선거일 현재 18세가 되어야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 가입 같은 경우에는 가입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입 시점이 선거일 현재의 이전에 되기 때문에 만 18세, 현행으로 말하면 만 19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정당에 추천할 수 있느냐, 결국 이런 사람들은 무소속 후보자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정당 가입 연령을 해결을 해 놓고 그러한 것은 다른, 한시적으로라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거법의 부칙에 넣든지 특례규정을 넣든지 어쨌든 해소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그거는 정당법 개정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고쳐 놓으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사실은 올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물론 예를 든 겁니다. 올 지방선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날 18세가, 만약에 18세로 개정을 했을 때 18세가 되는 사람은 그 이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정당법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만이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정당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4월 30일에 특정 정당에서는 18세 안 된 사람을 당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부분은 정당법 개정할 때 논의를 하면 되지요. 여기서 다시 그거하고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러면 정당법 개정이 바로 뒤따라와야 되는데 안 되면 이 규정 바뀌 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게 아니지.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몇 개월, 한 2, 3개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당법 개정할 때 논의를 하면 돼요.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사무차장님, 저희가 정개특위 첫 번째 회의 때도 그랬고 그 부분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정당 가입 연령을 맞춰야 되는 걸 저희 위원 모두 다 인지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 발의된 법안도 있어요. 지금 와서 정당법 때문에 이 선거 연령 하향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같이 풀어야……

○이은주 위원 저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기 발의된 법안도 있고 언제까지 정당법 개정도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다만 속도 문제 때문에 하나 걸린다면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 때 동시에 있는 보궐선거에서 혹시 18세 후보를

공천하고자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법의 개정이 좀 늦을 경우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그 부분은 2소위에서, 다른 소위에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면 될 거라고 보고.

일단 우리 소위에서는 아까 정점식 위원님 말씀과 이은주 위원님 두 분 말씀대로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18세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18세도, 현행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일치되는 나이가 18세이기 때문에 18세도 의미가 있겠지만 김민철 위원님과 제가 발의한 선거권 연령과 연동을 시켜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건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연령으로 특정을 하지 말고 10페이지에 있는 이은주 의원님 것처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여기서 다시 차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차피 선거권이 18세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피선거권을 그걸 차용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권이 조정이 되면 당연히 피선거권 문제도 또 논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18세로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은주 위원 저도 동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속도를 못 쫓아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맞추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전체 여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대로 만 18세로 피선거권 인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저도 선거권,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나이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19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만 18세 국회의원이 탄생을 하더라도 민법상 행위능력이나 이런 또 제한될 여지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나이와 관련해서는 민

법상 나이도 한 18세 정도로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18세 이상으로 일치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적용 시기를 3월 9일 날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 적용을 하면 이거는 그쪽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 시기를 그 이후에 실시되는 선거부터 이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후의 선거부터 적용을 하면……

○이은주 위원 아니지요……

○김영배 위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소위원장 조해진 3월 9일입니까, 6월 1일……

○정점식 위원 3월 9일은 대선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는 적용하지를 않고 6월 1일부터.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기보다는 남는 게 정당법 소위가 고쳐져야 되니까……

○정점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선거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을 넣어 줘야 되거든요.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저는 이게 참 어렵게, 오랜 기간 논의가 됐고 또 어렵게 사회적인 합의처럼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기다렸던 피선거권을 못 가졌던 분들은 3월 9일 보궐선거도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마당에 굳이 3월 9일 보궐선거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힘겹게 피선거권 연령이라는 민주주의가 엄청난 전진을 이룬 이 법안의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소위에서 이렇게 하고 2소위에서 또 속도 맞춰서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실제 완벽한 피선거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혹시 선관위의 의견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우리 피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 준 것보다는 훨씬 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뒤로 빼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주는 게, 이왕에 줄 것 같으면 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해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이왕에 바꿀 거라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점식 위원 저는 양보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런 불균형이라든지 지금 현재 선거법 부칙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확정장치 부분은 대체로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하지를 않고 그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하자는 식으로 선관위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과 확정장치 조항을 각자 또 부칙을 따로 나눠 가지고 시행 시기를 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의견은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이정문……

아, 이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은주 위원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조해진 예,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먼저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도 굳이 이렇게…… 오늘 잘 되면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그거를 다음 적용되는 3월 선거나 그거로 제외시킬 필요는 없어 보이고 바로 다음 첫 적용되는 선거부터 적용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도 있는데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교육부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 고민 중의 하나는 예를 들면 18세 공직 당선자가 나왔을 때 학교 재학 중이면 이게 재·보궐선거는 당선되자마자 바로 임기 시작되고 공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출석 문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등등 교육부 자체도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예,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이왕 하는 김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개인의 결단이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18세로 선거권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거기에는 사실은 많은 이런 꺾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포함돼 있고 자기 인생에서 이게 어떻게 다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대안들은 물론 준비가 동시에 돼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은 역시 선거권을 부여한 그 정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선거법을 논의하는 게 저는 옳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교육부의 고민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 뒤에 필요한 사후적 조치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추후에 더 다른 법들도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당법 논의를 포함해서 다른 논의도 필요한 것은 더 제기를 해서 추가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오늘은 이대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3월 9일 적용안으로요?

○김영배 위원 예.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차장님, 선거 연령, 피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아까 교육부의 여러 가지 준비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18세 이하로 하향을 해서 3월 9일 날 이것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군인들의 문제, 현역 군인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에서 제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비한다고 했을 때 3월 9일 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물론 정당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신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교육부 의견은 저희들이 받은 지가 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관위에서 그걸 다 논의를 해서 갖고 오셔야지요.

군인이, 현역병이 출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 상정 안 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지금 현역 군인은 특정직 해 가지고 입후보 제한직에, 53조에서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되는 직 해 가지고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어서 그 직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렵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합의가 된 마당에 3월 보궐선거를 제외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철회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합의 정신에 맞춰서 그렇게……

○정춘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강대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헌법재판소의 25세 규정 합헌 결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생각하고 흔쾌히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법과 법이 막 혼재되어서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중앙선관위의 차장님한테 제가 물을 어떤 상황이 안 되고, 그런 법제도들도 좀 검토하는 문제들도 여기에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3월 9일 날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 이런 문제들은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지금 유엔 인권헌장에 보면 18세가 아동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19세를 성년으로 치면 18세는 법률 행동을 할 때는 민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방금 김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하교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이나 만 18세가 넘는 이런 사람들을 선거의 장으로 끌어내 줘야 되지 무조건 '18세에 피선거권 있으니까 나는 출마……', 출마에 대한 포커스만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뒤에 후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에 따른 혼란은 누구의 책임이나 이거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논의가 뒷받침이 되어 줘서 향후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3월 9일 날 적용한다 하더라도 빨리 후속적으로 이 법안들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우리가 좀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의 몫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는 이걸 언제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교육부 관계자님 오늘 나와……

혹시 차장님, 교육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저희들이 교육부 의견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요. 교육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예컨대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됐을 때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법의 행위능력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받아놓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이 의견 자체를, 의안 자체를 논의하면 그런 부분들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냥 법만 만들어 줘 가지고 자격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참고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합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피선거권 연령 조정하는 것, 18세로 하는 것 저희가 할 일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려의 부분들은 선관위에서 충분히 관련기관들과 의논하시면서 대안을, 법적인 대안 혹은 정책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내 주시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다루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대체로 다수가 18세 적용은 3월 9일 재보선 때부터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합의된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종합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장 조해진 예, 선관위 말씀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확정장치 사용과 관련해서 법 간의 충돌 문제가 있어서요. 우리 법의 102조에 보면 야간 연설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9시부터 7시까지 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시간을 그렇게 해 놓으면 102조하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하고 상충이 되고요.

또 녹화기만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1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102조 2항에 보면 녹화기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

○정점식 위원 아니, 녹화기를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지금 녹화기도 102조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1시까지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개정 의견은.

○정점식 위원 그것도 같이 개정하면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러면 102조도 여기에 맞게끔 규정을 바꿔 줘야 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 자체를 오늘 바로 이렇게 하려면 혹시 또 미비한 점이 있을까 봐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지요, 녹음·녹화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정점식 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러면 처벌 조항도 여기에 맞게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해서, 지금 일단 각 해당 조문과 다른 해당 관련 조문과 그쪽의 조정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정확한 조문 정리를 하는 것으로,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법조문을 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그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하시되 위원장님에게 체계·자구를 위임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결을 하시고 나서 추후에 조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전체회의 되기 전에 조정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장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관련 보고

(15시49분)

○소위원장 조해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과 관련하여 논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원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한 장짜리를 봐 주셔야 됩니다. 행안부 보고에 앞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관련 보고의 건 관련해서 지금은 상정하신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공개 회의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필요한 말씀이 계시다면 대체토론 혹은 질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정회를 하고 나서 비공개로 행안부에서 보고하고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결정 필요사항 중의 하나가 지방선거구 확정 기준이 되는 인구 시점입니다.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하냐면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는 공선법에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인구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참고로 앞의 지방선거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대상 법률안은 오늘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추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심사대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보면 제도 개선과 선거구역 및 정수 조정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제도 개선은 시·도의회의원 정수 조정비율, 비례대표 지방의원 정수 등 이런 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는 사항이 경북 군위군의 대구 이관 문제인데 해당 법률이 내년 1월에 국회에 제출돼서 행안위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선거구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선거구역 및 정수 조정은 좁게 한정해서 보면 공직선거법 별표 2, 공직선거법 별표 3, 제주도법,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나누신 후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행안부에서 비공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관련 보고를 위해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조해진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존음을 아껴 쓰시는 가장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도의원 선거구 확정과 지방의원 정수 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내용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요청하시는 통계와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말씀 중에도 있었던 것처럼 정회 중에 논의하실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선거구 확정 기준일과 관련해서 지난 2008년 지선은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이전 예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산정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국회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15개월 전 인구조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7개월 기준 정도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원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것은 저희 행안부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시는 일정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7회 지선 때는 전년도 10월로 정했었고요. 법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의 인구수가 선거와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제반 준비 일정을 고려해 보면 대개 금년도 10월 정도의 기준으로 정해 주시면 그 인구수에 따라서 모든 제도적인 검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결정해 주실수록 준비 과정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강대식 위원** 차관님, 행안부에서 지금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돌리려면 가장……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도별로 의원 정수를 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상한선, 하한선을 맞추려면 인구수를 언제 기준으로 확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 인구수를 가지고 상하한선과 시도별로 의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장 첫 단추가 인구수를 언제 시점으로 산정하도록 결정해 주시느냐 이게 단추가 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현재 각 시도별이나 도별로 보면 100분의 14 이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광역도라든지 시라든지, 물론 농촌 지역의 어떤 특수 상황은 있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광역단체가 상대적으로 도의원 수라든지 시의원 수가 상당히 적은, 지금 그런 편차가 큰 어떤 그게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장님,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논의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시고……

○**소위원장 조해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면 다른 위원님 공개 의견 없으시면 일단 정회한 다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해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회의 중 따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김영배 간사님과 협의해서 향후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안전부 차관님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 대 식	金 炳 旭	김 승 남	김 영 배
이 은 주	이 정 문	정 점 식	정 춘 숙
조 해 진	홍 정 민		

○**출석 전문위원**

진 문 위 원	장 지 원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 정 안 전 부 차 관	고 규 창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차 장	박 찬 진
---------	-------